

노동자협동조합법안 개요

제 1 목적

본 법률은 각자가 생활과 조화를 이루면서 그 의욕 및 능력에 따라 취업할 기회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황 등을 감안하여 조합원이 출자하여, 각자가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조합의 사업이 이루어지고, 조합원 스스로가 사업에 종사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는 조직에 관하여 설립,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다양한 취업기회를 창출하는 것을 촉진함과 동시에 해당 조직을 통해 지역에서 다양한 수요에 맞는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하고 활력 있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1 조 관계)

제 2 노동자협동조합

1 통칙

1 조합의 기본원리, 기타 기준 및 운영 원칙

(1)노동자협동조합(이하 '조합')은 다음에 열거된 기본원리에 따라 사업이 이루어짐으로써 지속가능하고 활력 있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 3 조 제 1 항 관계)

- ①조합원이 출자할 것.
- ②그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조합원의 의견이 적절히 반영될 것.
- ③ 조합원이 조합이 실시하는 사업에 종사할 것.

(2)조합은 (1) 외에 다음에 열거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 3 조 제 2 항 관계)

- ① 조합원이 임의로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을 것.
 - ② 3 의 3(1)에 근거하여 조합원과의 노동계약을 체결할 것.
 - ③ 조합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출자구수에 관계없이 평등할 것.
 - ④조합과 노동계약을 체결하는 조합원이 총 조합원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할 것.
 - ⑤잉여금의 배당은 조합원이 조합의 사업에 종사한 정도에 따라 할 것.
- (3)조합은 영리를 목적으로 그 사업을 해서는 안 될 것. (제 3 조 제 3 항 관계)
- (4)조합은 특정 정당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 (제 3 조 제 5 항 관계)

2 조합원의 자격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개인으로 할 것. (제 6 조 관계)

2 사업

1 조합이 실시하는 사업

(1)조합은 1 의 1(1)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업을 실시한다. (제 7 조 제 1 항 관계)

(2)조합은 노동자 파견사업 및 그 외, 조합이 그 목적에 비추어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것으로 정령에서 정한 사업을 실시할 수 없다.

(제 7 조 제 2 항 관계)

2 사업 종사자의 인원 요건

- (1) 총 조합원의 5분의 4 이상의 조합원이 조합이 실시하는 사업에 종사할 것.
(제 8 조 제 1 항 관계)
- (2) 조합이 실시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4분의 3 이상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제 8 조 제 2 항 관계)

3 조합원

1 출자

- (1) 조합원은 출자 1 구 이상을 가지며, 출자 1 구의 금액은 균일해야 한다.
(제 9 조 제 1 항 및 제 2 항 관계)
- (2)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할 것. (제 9 조 제 5 항 관계)

2 지분의 양도 제한

조합원의 지분은 양도할 수 없을 것. (제 13 조 관계)

3 노동계약의 체결 등

- (1) 조합은 수행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조합원(일부 임원인 조합원 제외)과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 20 조 제 1 항 관계)
- (2) 조합은 조합원(조합원이었던 자 포함)으로서 조합과의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업에 종사하는 자가 의결권 또는 선거권의 행사, 탈퇴, 기타 조합원 자격에 근거한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 및 기타 노동관계상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 21 조 관계)

4 설립

조합 설립에 대해서는 준칙주의(準則主義)에 의하며 3명 이상의 발기인이어야 할 것
(제 22 조부터 제 28 조까지 관계)

5 관리

1 정관 및 규약

정관 및 규약에 관한 필요한 규정을 정비할 것. (제 29 조부터 제 31 조까지 관계)

2 임원, 조합원 감사회 등

- (1) 조합에 임원으로서 이사(3명 이상) 및 감사(1명 이상)를 둘 것.
(제 32 조 제 1 항 및 제 2 항 관계)
- (2) 이사는 조합원이어야 한다. (제 32 조 제 4 항 관계)
- (3) 조합원 총수가 일정 기준을 넘는 조합은 외부감사(1인 이상)를 두어야 한다.
(제 32 조 제 5 항 관계)
- (4) (1)에 관계 없이 조합원 총수가 20 명을 초과하지 않는 조합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를 대신하여 이사 이외의 모든 조합원으로 조직하는 조합원 감사회를 둘 수 있다. (제 54 조 제 1 항 관계)

(5)기타 임원, 조합원 감사회 등에 관한 필요한 규정을 정비할 것.
(제 32 조부터 제 57 조까지 관계)

3 총회 등

(1)이사는 각 사업연도와 관련된 조합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책의 실시상황 및 그 결과와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노사협정 체결 등의 내용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66 조 관계)

(2)조합원 총수가 200 명을 넘는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대신하는 총대회를 설치할 수 있음.
(제 71 조 제 1 항 관계)

(3)기타 총회 등에 관한 필요한 규정을 정비할 것.
(제 58 조부터 제 71 조까지 관계)

4 회계

(1)조합은 정관으로 정한 액수에 달할 때까지는 매 사업연도 잉여금의 10분의 1 이상을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제 76 조 제 1 항 관계)

(2)조합은 그 사업규모 확장 또는 사업활동 확대를 통한 취업기회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충당하기 위해 매 사업연도 잉여금의 20분의 1 이상을 취업창출 등 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제 76 조 제 4 항 관계)

(3)조합은 조합원의 조합 사업에 관한 지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충당하기 위해 매 사업연도 잉여금의 20분의 1 이상을 교육 이월금으로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해야 한다.
(제 76 조 제 5 항 관계)

6 해산 및 청산과 합병

해산 및 청산과 합병에 관한 필요한 규정을 정비할 것. (제 2 장 제 6 절 관계)

제 3 노동자협동조합 연합회

노동자협동조합 연합회(이하 '연합회')가 실시하는 사업(회원인 조합의 지도, 연락 및 조정에 관한 사업) 기타 연합회에 관한 필요한 규정을 정비할 것.

(제 3 장 관계)

제 4 감독 등

1 소관부처의 감독

소관부처(개별조합: 도도부현(都道府県)지사, 연합회: 후생노동대신)의 문서 발급, 기타 감독에 관한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여야 한다.

(제 124 조부터 제 129 조까지 관계)

2 지침

후생노동장관은 조합 및 연합회의 적정한 운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미리 노동정책심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지침을 정한다. (제 130 조 관계)

제 5 기타

1 시행 기일

본 법률은 일부를 제외하고 공포 후 2년 이내 정령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할 것.
(부칙 제 1 조 관계)

2 기업조합 또는 NPO 법인에서 조합으로 조직 변경

본 법률 시행 시 존재하는 기업조합 또는 NPO 법인은 시행 후 3년 이내에 총회 의결에 따라(준칙주의), 그 조직을 변경하여 조합이 될 수 있음.
(부칙 제 4 조 관계)

3 NPO 법인으로부터의 조직 변경에 관한 특별 규제

NPO 법인부터 조직을 변경한 조합은 NPO 법인 시대의 재산(조직변경 시 재산)에 대하여 다음에 열거된 의무 및 기타 특별 규제를 받는다.

1 조직변경 시 재산은 특정 비영리 활동과 관련된 사업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소관부처의 확인을 받은 사업에 의해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부칙 제 21 조 관계)

2 매 사업연도 종료 후, 조직변경 시 재산액과 관련된 사용상황을 소관부처에 보고해야 한다. (부칙 제 23 조 관계)

3 해산한 조합의 잔여재산 중 조직변경 시의 잔여재산에 해당하는 분은 NPO 법인 등에 귀속시켜야 한다. (부칙 제 24 조 관계)

4 검토 조항(시행 후 5년) 기타 규정을 들 것